트리븐 논산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4.12.13.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u>종합저축으로 전환</u>한 경우, 해당 주택의 <u>순위확인서</u>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66-6429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논산시 거주자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	결자치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u>.</u>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성	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4.12.13.(금)	2024.12.23.(월)	2024.12.24.(화)	2024.12.26.(목)	2025.01.02.(목)	2025.01.04.(토) ~2025.01.08.(수)	2025.01.13.(월) ~2025.01.15.(수)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2044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	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여	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 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 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m'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워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 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trivn-doosan-nonsan.com)에 공개 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0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Χ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단지 유의사항

2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2.13.(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논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논산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4.12.23.(월)	2024.12.24.(화)	2024.12.26.(목)	2025.01.02.(목)	2025.01.04.(토) ~2025.01.08.(수)	2025.01.13.(월) ~2025.01.15.(수)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기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 (연성섭구) 사업구세 선근구택	■ (연성접구) 성약공성 /	[민근생		(구조: 중성금도 근신지	대중 501년시)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 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3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시 도시주택과 22028호(2024.12.1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13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25층 7개동 총 429세대

[특별공급 163세대(기관추천 29세대, 다자녀가구 43세대, 신혼부부 52세대, 노부모부양 13세대, 생애최초 2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		도미성		주!	택공급면적(෦	n²)	기타	계약	세대별	총공급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최하층
구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면적	세네필 대지지분	세대수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설립 세대수	우선배정 세대수
	01	059.9510	59	59.9510	18.2221	78.1731	41.6052	119.7783	31.4344	36	4	4	6	1	3	18	18	2
	02	084.8250A	84A	84.8250	24.3788	109.2038	58.8674	168.0712	44.4767	159	16	16	29	5	14	80	79	7
	03	084.7869B	84B	84.7869	24.4791	109.2660	58.8410	168.1070	44.4567	32	3	3	6	1	3	16	16	2
	04	084.9814C	84C	84.9814	25.3513	110.3327	58.9760	169.3087	44.5587	40	4	4	7	1	4	20	20	2
2024000723	05	084.6480D	84D	84.6480	24.5581	109.2061	58.7446	167.9507	44.3839	21	2	2	4	1	2	11	10	1
2024000723	06	084.9766E	84E	84.9766	26.8320	111.8086	58.9726	170.7812	44.5562	2	-	-	-	-	-	-	2	-
	07	108.5700	108	108.5700	30.6083	139.1783	75.3462	214.5244	56.9270	90	-	9	-	3	-	12	78	4
	08	135.8434	135	135.8434	37.1398	172.9832	94.2735	267.2568	71.2274	48	-	5	-	1	-	6	42	2
	09	176.6225	176	176.6225	49.5778	226.2003	122.5737	348.7740	92.6094	1	-	-	-	-	-	-	1	-
			•	•		429	29	43	52	13	26	163	266	20				

-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 기/기계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부대시설 등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법」 및 관련법령에 의거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절차 등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 을 수 있으며, 소수점 이하의 면적변경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습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공급금액

(단위: 세대, 원)

Ohii	- 4		41151		공급	금액		계약	∃ (10%)	중도금(60%)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	해당 세대수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11.1	762		741-11 1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시	계약체결 후 1개월내	2025-05-12	2025-10-13	2026-03-10	2026-09-10	2027-02-11	2027-06-10	입주지정일
		1층	2	79,580,320	202,219,680	-	281,800,000	10,000,000	18,180,000	28,180,000	28,180,000	28,180,000	28,180,000	28,180,000	28,180,000	84,540,000
		2층	2	82,432,560	209,467,440	-	291,900,000	10,000,000	19,190,000	29,190,000	29,190,000	29,190,000	29,190,000	29,190,000	29,190,000	87,570,000
		3층	2	85,284,800	216,715,200	=	302,000,000	10,000,000	2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90,600,000
59	105동(1, 2호)	4층	2	88,108,800	223,891,200	-	312,000,000	10,000,000	2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31,200,000	93,600,000
		5층	2	90,961,040	231,138,960	-	322,100,000	10,000,000	2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32,210,000	96,630,000
		6-9층	8	93,813,280	238,386,720	-	332,200,000	10,000,000	23,220,000	33,220,000	33,220,000	33,220,000	33,220,000	33,220,000	33,220,000	99,660,000
		10층이상	18	94,745,200	240,754,800	=	335,500,000	10,000,000	23,550,000	33,550,000	33,550,000	33,550,000	33,550,000	33,550,000	33,550,000	100,650,000
	1015(04)	2층	1	116,320,560	295,579,440	-	411,900,000	10,000,000	31,190,000	41,190,000	41,190,000	41,190,000	41,190,000	41,190,000	41,190,000	123,570,000
84A	101동(2호)	3층	1	120,330,640	305,769,360	=	426,100,000	10,000,000	32,610,000	42,610,000	42,610,000	42,610,000	42,610,000	42,610,000	42,610,000	127,830,000

			1	T				·····		т						
		4층	1	124,340,720	315,959,280	-		10,000,000	3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44,030,000	132,090,000
		5층	1	128,350,800	326,149,200	-	454,500,000	10,000,000	35,450,000	45,450,000	45,450,000	45,450,000	45,450,000	45,450,000	45,450,000	136,350,000
		6-9층	4	132,360,880	336,339,120	-	468,700,000	10,000,000	36,870,000	46,870,000	46,870,000	46,870,000	46,870,000	46,870,000	46,870,000	140,610,000
		10층이상	4	133,688,160	339,711,840	-	473,400,000	10,000,000	37,340,000	47,340,000	47,340,000	47,340,000	47,340,000	47,340,000	47,340,000	142,020,000
		1층	1	111,180,880	282,519,120	-	393,700,000	10,000,000	29,370,000	39,370,000	39,370,000	39,370,000	39,370,000	39,370,000	39,370,000	118,110,000
		2층	1	115,162,720	292,637,280	-	407,800,000	10,000,000	30,78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40,780,000	122,340,000
		- 3층	1	119,116,320	302,683,680	_		10,000,000	32,180,000	42,180,000	42,180,000	42,180,000	42,180,000	42,180,000	42,180,000	126,540,000
	104도(1호)															
	104동(1호)	4층 - +	1	123,098,160	312,801,840	-		10,000,000	33,590,000	43,590,000	43,590,000	43,590,000	43,590,000	43,590,000	43,590,000	130,770,000
		5층	1	127,051,760	322,848,240	-		10,000,000	34,990,000	44,990,000	44,990,000	44,990,000	44,990,000	44,990,000	44,990,000	134,970,000
		6-9층	4	131,033,600	332,966,400	-		10,000,000	3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139,200,000
		10층이상	10	132,360,880	336,339,120	-	468,700,000	10,000,000	36,870,000	46,870,000	46,870,000	46,870,000	46,870,000	46,870,000	46,870,000	140,610,000
		1층	3	110,079,520	279,720,480	-	389,800,000	10,000,000	28,980,000	38,980,000	38,980,000	38,980,000	38,980,000	38,980,000	38,980,000	116,940,000
		2층	3	114,004,880	289,695,120	-	403,700,000	10,000,000	30,370,000	40,370,000	40,370,000	40,370,000	40,370,000	40,370,000	40,370,000	121,110,000
	103동(1호),	3층	4	117,930,240	299,669,760	-	417,600,000	10,000,000	31,760,000	41,760,000	41,760,000	41,760,000	41,760,000	41,760,000	41,760,000	125,280,000
	106동(1, 2호),	4층	4	121,855,600	309,644,400	-	431,500,000	10,000,000	33,150,000	43,150,000	43,150,000	43,150,000	43,150,000	43,150,000	43,150,000	129,450,000
	107동(1호)	- 5층	4	125,780,960	319,619,040	_		10,000,000	34,540,000	44,540,000	44,540,000	44,540,000	44,540,000	44,540,000	44,540,000	133,620,000
	, , ,	6-9층	16	129,734,560	329,665,440			10,000,000	35,940,000	45,940,000	45,940,000	45,940,000	45,940,000	45,940,000	45,940,000	137,820,000
		10층이상	44	131,033,600	332,966,400	-		10,000,000	3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46,400,000	139,200,000
		1층	2	110,616,080	281,083,920	-		10,000,000	29,17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39,170,000	117,510,000
		2층	2	114,569,680	291,130,320	-		10,000,000	30,570,000	40,570,000	40,570,000	40,570,000	40,570,000	40,570,000	40,570,000	121,710,000
		3층	2	118,523,280	301,176,720	-	419,700,000	10,000,000	31,970,000	41,970,000	41,970,000	41,970,000	41,970,000	41,970,000	41,970,000	125,910,000
	103동(3, 4호)	4층	2	122,476,880	311,223,120	-	433,700,000	10,000,000	33,370,000	43,370,000	43,370,000	43,370,000	43,370,000	43,370,000	43,370,000	130,110,000
		5층	2	126,430,480	321,269,520	-	447,700,000	10,000,000	34,770,000	44,770,000	44,770,000	44,770,000	44,770,000	44,770,000	44,770,000	134,310,000
		6-9층	8	130,384,080	331,315,920	-	461,700,000	10,000,000	36,170,000	46,170,000	46,170,000	46,170,000	46,170,000	46,170,000	46,170,000	138,510,000
		10층이상	32	131,683,120	334,616,880	-	466,300,000	10,000,000	36,630,000	46,630,000	46,630,000	46,630,000	46,630,000	46,630,000	46,630,000	139,890,000
		1층	2	110,136,000	279,864,000	_		10,000,000	2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39,000,000	117,000,000
		2층	2	114,061,360	289,838,640	-		10,000,000	30,390,000	40,390,000	40,390,000	40,390,000	40,390,000	40,390,000	40,390,000	121,170,000
		3층	2	117,986,720	299,813,280	-		10,000,000	31,780,000	41,780,000	41,780,000	41,780,000	41,780,000	41,780,000	41,780,000	125,340,000
84B	101동(1호),															
046	102동(1호)	4층	2	121,940,320	309,859,680	-		10,000,000	33,18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43,180,000	129,540,000
		5층	2	125,865,680	319,834,320	-		10,000,000	34,570,000	44,570,000	44,570,000	44,570,000	44,570,000	44,570,000	44,570,000	133,710,000
		6-9층	8	129,791,040	329,808,960	-		10,000,000	35,960,000	45,960,000	45,960,000	45,960,000	45,960,000	45,960,000	45,960,000	137,880,000
		10층이상	14	131,118,320	333,181,680	-		10,000,000	36,430,000	46,430,000	46,430,000	46,430,000	46,430,000	46,430,000	46,430,000	139,290,000
		3층	2	119,144,560	302,755,440	-	421,900,000	10,000,000	32,190,000	42,190,000	42,190,000	42,190,000	42,190,000	42,190,000	42,190,000	126,570,000
		4층	2	123,126,400	312,873,600	-	436,000,000	10,000,000	3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30,800,000
84C	102동(2, 3호)	5층	2	127,108,240	322,991,760	-	450,100,000	10,000,000	35,010,000	45,010,000	45,010,000	45,010,000	45,010,000	45,010,000	45,010,000	135,030,000
		6-9층	8	131,061,840	333,038,160	-	464,100,000	10,000,000	36,410,000	46,410,000	46,410,000	46,410,000	46,410,000	46,410,000	46,410,000	139,230,000
		10층이상	26	132,389,120	336,410,880	-	468,800,000	10,000,000	36,880,000	46,880,000	46,880,000	46,880,000	46,880,000	46,880,000	46,880,000	140,640,000
		1층	1	109,514,720	278,285,280	_	387,800,000	10,000,000	28,780,000	38,780,000	38,780,000	38,780,000	38,780,000	38,780,000	38,780,000	116,340,000
		 2층	1	113,440,080	288,259,920	-		10,000,000	3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120,510,000
			1	117,337,200	298,162,800	-		10,000,000	31,550,000	41,550,000	41,550,000	41,550,000	41,550,000	41,550,000	41,550,000	124,650,000
84D	107동(2호)	- 3·6 4층	1	121,262,560	308,137,440	-		10,000,000	32,940,000	42,940,000	42,940,000	42,940,000	42,940,000	42,940,000	42,940,000	128,820,000
040	1078(23)															
		5층 	1	125,159,680	318,040,320	-		10,000,000	3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44,320,000	132,960,000
		6-9층	4	129,085,040	328,014,960	-		10,000,000	35,710,000	45,710,000	45,710,000	45,710,000	45,710,000	45,710,000	45,710,000	137,130,000
		10층이상	12	130,384,080	331,315,920	-		10,000,000	36,170,000	46,170,000	46,170,000	46,170,000	46,170,000	46,170,000	46,170,000	138,510,000
84E	101동(2호)	10층이상	1	202,706,720	515,093,280	-		10,000,000	61,780,000	71,780,000	71,780,000	71,780,000	71,780,000	71,780,000	71,780,000	215,340,000
J	103동(1호)	10층이상	1	198,696,640	504,903,360	-	703,600,000	10,000,000	60,360,000	70,360,000	70,360,000	70,360,000	70,360,000	70,360,000	70,360,000	211,080,000
		1층	2	148,606,504	377,721,360	37,772,136	564,100,000	10,000,000	46,410,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56,410,000	169,230,000
		2층	2	153,927,992	391,247,280	39,124,728	584,300,000	10,000,000	48,430,000	58,430,000	58,430,000	58,430,000	58,430,000	58,430,000	58,430,000	175,290,000
		3층	4	159,223,136	404,706,240	40,470,624	604,400,000	10,000,000	50,440,000	60,440,000	60,440,000	60,440,000	60,440,000	60,440,000	60,440,000	181,320,000
108	102동(4, 5호),	4층	4	164,544,624	418,232,160	41,823,216		10,000,000	52,460,000	62,460,000	62,460,000	62,460,000	62,460,000	62,460,000	62,460,000	187,380,000
	104동(3, 4호)	5층	4	169,839,768	431,691,120	43,169,112		10,000,000	54,470,000	64,470,000	64,470,000	64,470,000	64,470,000	64,470,000	64,470,000	193,410,000
		6-9층	16	175,134,912	445,150,080	44,515,008		10,000,000	56,480,000	66,480,000	66,480,000	66,480,000	66,480,000	66,480,000	66,480,000	199,440,000
		10층이상	58	176,926,304	449,703,360	44,970,336		10,000,000	57,160,000	67,160,000	67,160,000	67,160,000	67,160,000	67,160,000	67,160,000	201,480,000
l——																
135	104동(2호)	1층	1	187,516,592	476,621,280	47,662,128	711,800,000	10,000,000	61,180,000	71,180,000	71,180,000	71,180,000	71,180,000	71,180,000	71,180,000	213,540,000
l ———	L	1		l	L			L	J	L						I

		2층	1	194,207,968	493,629,120	49,362,912	737,200,000	10,000,000	63,720,000	73,720,000	73,720,000	73,720,000	73,720,000	73,720,000	73,720,000	221,160,000
		3층	1	200,899,344	510,636,960	51,063,696	762,600,000	10,000,000	66,260,000	76,260,000	76,260,000	76,260,000	76,260,000	76,260,000	76,260,000	228,780,000
		4층	1	207,617,064	527,711,760	52,771,176	788,100,000	10,000,000	68,810,000	78,810,000	78,810,000	78,810,000	78,810,000	78,810,000	78,810,000	236,430,000
		5층	1	214,308,440	544,719,600	54,471,960	813,500,000	10,000,000	71,350,000	81,350,000	81,350,000	81,350,000	81,350,000	81,350,000	81,350,000	244,050,000
		6-9층	4	220,999,816	561,727,440	56,172,744	838,900,000	10,000,000	73,890,000	83,890,000	83,890,000	83,890,000	83,890,000	83,890,000	83,890,000	251,670,000
		10층이상	14	223,239,056	567,419,040	56,741,904	847,400,000	10,000,000	74,740,000	84,740,000	84,740,000	84,740,000	84,740,000	84,740,000	84,740,000	254,220,000
		1층	1	185,646,168	471,867,120	47,186,712	704,700,000	10,000,000	60,470,000	70,470,000	70,470,000	70,470,000	70,470,000	70,470,000	70,470,000	211,410,000
		2층	1	192,284,856	488,741,040	48,874,104	729,900,000	10,000,000	62,990,000	72,990,000	72,990,000	72,990,000	72,990,000	72,990,000	72,990,000	218,970,000
		3층	1	198,897,200	505,548,000	50,554,800	755,000,000	10,000,000	65,50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75,500,000	226,500,000
	103동(2호)	4층	1	205,535,888	522,421,920	52,242,192	780,200,000	10,000,000	68,020,000	78,020,000	78,020,000	78,020,000	78,020,000	78,020,000	78,020,000	234,060,000
		5층	1	212,148,232	539,228,880	53,922,888	805,300,000	10,000,000	70,530,000	80,530,000	80,530,000	80,530,000	80,530,000	80,530,000	80,530,000	241,590,000
		6-9층	4	218,786,920	556,102,800	55,610,280	830,500,000	10,000,000	73,050,000	83,050,000	83,050,000	83,050,000	83,050,000	83,050,000	83,050,000	249,150,000
		10층이상	16	220,999,816	561,727,440	56,172,744	838,900,000	10,000,000	73,890,000	83,890,000	83,890,000	83,890,000	83,890,000	83,890,000	83,890,000	251,670,000
176	101동(2호)	1층	1	395,581,504	1,005,471,360	100,547,136	1,501,600,000	10,000,000	140,160,000	150,160,000	150,160,000	150,160,000	150,160,000	150,160,000	150,160,000	450,480,000

■ 공통 유의 사항

-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 된 가격입니다.(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확장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발코니확장 공사비용과 유상옵션 등]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 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 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별 대지지분은 각 시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고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대지가 별도 구분없이 대지를 공유하며, 아파트(공동주택)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공동주택)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 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타입별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근린생 활시설로 할애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고 실별 안목치수는 유상옵션 마감 전 마감내용으로 반영하였으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하였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 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취급기관과 관련한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 중도금 대출을 원하는 수분양자는 계약체결 후 지정된 대출취급기관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완납 후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으나 중도금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 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 발급제한 등)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 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도,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

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음)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 (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방문 및 점검토록 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관리비 선수금을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85m² 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의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생길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분양가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 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 및 판매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된 분양 및 판매조건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는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또는 홈오토메이션)의 기능이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주차공간의 경우 인접 구조물로 인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면의 안목치수는 타일, 가구 등 마감재 설치 두께가 미반영된 수치로 입주 시 실제 측정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시계획인가 미완료 시 또는 준공 전 인허가청 요구사항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근의 분묘, 하수종말처리장, 장례식장 등이 위치해있을 수 있으나, 입주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및 상품개선 등은 사업진행 중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 지하층(주동·주차장)의 표기 등 역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주동 및 부대시설의 형태, 옥상 옥탑부, 창호 형태, 측벽 디자인, 외부 색채, 외벽 로고 사인, 외벽 마감, 각종 시설물 등의 계획은 소비자 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법규 현황,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른 시공성 개선, 상품 품질 및 디자인 개선, 시공사의 디자인 매뉴얼 변경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주택 공급계약서는「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분양계약자(매수자 혹은 수분양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50%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 거래가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doc-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발행 불가)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 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59	84A	84B	84C	84D	84E	108	135	176	합 계		
	국	국가유공자		3	1	1	1	-	-	-	-	7
	장기복	·무 제대군인	-	2	-	-	-	-	-	-	-	2
	10년 이상	당 장기복무군인	1	4	1	1	1	-	-	-	-	8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소기	중소기업 근로자		3	1	1	-	-	-	-	-	6
	장애인	충청남도	1	2	-	1	-	-	-	-	-	4
		대전광역시	-	1	-	-	-	-	-	-	-	1
		세종특별자치시	-	1	-	-	-	-	-	-	-	1
다자녀가구	- 특별공급		4	16	3	4	2	-	9	5	-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6	29	6	7	4	-	-	-	-	52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5	1	1	1	-	3	1	-	13
생애최초 특별공급			3	14	3	4	2	-	-	-	-	26
합 계				80	16	20	11	0	12	6	0	16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특별공급

구분			내용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 ※ 2024.03.25. 시행된 「주택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	방법						
공급기준	당첨자빌	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 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	당첨 자발표일 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일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Sement Et 14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 ?	덕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² 이성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² 이	-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	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정책과 ■ 장애인 :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대전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청 노인장애인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3세대

구분	내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논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 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
대상자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논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②배점

당첨자 선정방법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메급8국	동비급	기준	점수	미포			
계	100						
		4명 이상	40				
미성년 자녀수(1)	40	3명	3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25				
		3명 이상	15				
영유아 자녀수(2)	15	2명	1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1명	5				
비디그선(2)	-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 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세대구성(3)	5	한부모 가족	5	- 청약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복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기간(4)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투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			
		1년 이상 ~ 5년 미만	10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충청남 5			
거주기간(5)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영국전영사가 영헌사(한19세 여명, 마당한사가 본진한 영구 영헌으로 음)로서 중앙음 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I 〒 / I 已 (J)		1년 이상 ~ 5년 미만	5	BT 시포함으로는 현세까지 제국의의 시구한 시민을 받아			
J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본이나 가	~ 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	혼의 경	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5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논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신생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1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15%)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신생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2단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5%)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3단계	(35%)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4단계	(15%)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그런게	무심중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선정방법

당첨자

-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
-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논산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l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 ③지역: 해당지역 거주자(논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자녀기준

비고

- 자녀는「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2.13.(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미ㄹ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우선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부부 중 한 명만	100% 초과	7,004,510원~	8,248,468원~	8,775,072원~	9,563,283원~	10,351,494원~	11,139,705원~		
신생아일반공급,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9,806,313원	11,547,854원	12,285,099원	13,388,595원	14,492,090원	15,595,586원		
일반공급	부부 모두	120% 초과	8,405,412원~	9,898,161원~	10,530,086원~	11,475,939원~	12,421,793원~	13,367,646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ᄎᅒ고ᄀ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추첨공급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O(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구분 부동산 (건물+토지)	금액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억3,100만원	시가표준 주택 - 토지가액 단, 아래	액 적용	내용 -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물+토지)	이하		농업인고 * 「초지법 허가증의 * 공부상 * 종중소의 제한을	마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기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 이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	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경우 용되고 있는 경우 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논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선정방법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논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②**가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 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35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30
© T 0 11 7 T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③이즈자저츠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4-5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3조)

전용면적 85m²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26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논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 (예외)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	'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2단계	(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당첨자	3단계 4단계	우선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선정방법		(35%)					
2001		일반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15%)	세대의 혈평판소득이 신년도 도시는도자 기구원구할 혈평판소득의 130% 소파 160% 이야한 군 				
		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5단계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2단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IU 777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지	나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	학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닉	청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해당지역 거주자(논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12.13.(금)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立って こうしゅう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130% 초과	9,105,863원~	10,723,008원~	11,407,593원~	12,432,268원~	13,456,942원~	14,481,616원~
	일반공급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추첨공급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 =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 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구분 부동산 (건물+토지)	금액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내용 나용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이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토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5

구분	내용
丁世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논산시에 거주하거나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대상자	부양)
11.9.4	T6)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 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청약통장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0 7 5 0	① 6구에요 : 에6 구격에 단6기6한 6구에요에 기업이어 6개설 이 6되어고, 시구글·단구글 에시요구 이6년 판
자격요건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 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 스트 () . 웨이터 그의 트웨티아 이 기타를 다 기타고 하는 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1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²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²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해당지역 거주자(논산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m²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

당첨자 선정방법

가점항목	가점	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2 35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①무주택기간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0명	5	4명	25
②부양가족수			1명 10 5명		5명	30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2명 15 6명 이상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가입기간	17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Т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비구시	1년 미만	1	2년 이상	3		
ш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와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이원당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입주자저축의	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mark>우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mark>
비고		성약 시 유의사항 1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09:00~17:30

6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제3자 대리신청 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추가서류	위임시는 제출 생략)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배우자 포함)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확인하여 드리는 - 서비스 이용은 4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1.02.(목) ~ 2025.01.11(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1.02.(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7

■ 일	정 및 계약장소			
	구분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서류제출 방법 및 장소	계약체결
별 급 반 급 일 공	1순위	■ 일시: 2025.01.02.(목)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https://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사용 가능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5.01.04.(토) ~ 2025.01.08.(수) (10:00~16:00) ■ 장소 : 견본주택(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501번지) * 당첨자 외 입장 불가(동반 1인 가능) ※ 자격확인 서류 제출방법 및 예약관련 사항은	■ 일시 : 2025.01.13.(월) ~ 2025.01.15.(수) 3일간 (10:00~16:00) ■ 장소 : 견본주택(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501번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별도 통보예정.
유의사항	 ※ 당첨자 적격검수 제출 일정 기간 내 방문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서류 제출 일정 및 운영시간, 서류 제출 방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 기한 내 미접수 시 계약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어 기한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홈페이지(www.trivn-doosan-nonsan.com) 안내 예정이며,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호수 배정 추첨참여 및 계약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13.)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년 동안 보관 후 지체없이 파기처리 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

	서류	유형			
구분	<u></u>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특별공급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 시, 인터넷 청약(https://www.applyhome.co.kr)한 경우 생략 ■ 당사 견본주택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0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계약자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0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배우자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공통서류	0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본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0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0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0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 시, 인터넷 청약(https://www.applyhome.co.kr)한 경우 생략
		0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기관추천 특별공급	0		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다자녀 가구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수소면동사양, 제내수 및 제내수와의 관계 등 "선세포암" 아면 말급)
특별공급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정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0		직계비속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구분	서류 필수	유형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0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경우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자녀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 임신의 경우(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확인)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이력 포함)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0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 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아래 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고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주택공급신정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0		직계비속	
신혼부부 특별공급		0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 부동산> "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서류	유형			
구분	필수	-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 아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0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본인 및 세대원	■ 소유 부용선 선무에 내면 중시가격 열림 물덕물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0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및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0		가점산정기준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 확인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0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노부모 부양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특별공급	0			피부양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0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혼인 신고일, 자녀수, 과거1년 근로/사업소득세,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월평균 소득 확인)
	0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 아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세납부 입증 증빙서류 참고하여 발급
	0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보암)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 아대 신본부부특별중합 및 생애죄소특별중합 소득증명자뉴 삼고
		0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FAX 수신문서 등 복사본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0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구분	서류	유형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0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등기열람/발급> 부동산> "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결과)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아래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고
		0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본인 및 세대원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참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0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에 한함(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0	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본인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0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0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세대원	■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제출
		0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주택	■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부적격		0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주택 해당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공문
통보를		0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멸실을 확인하는 공문
받은자		0	기타 무주택자 증명 서류	해당 주택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0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공급 신청 자(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불가
대리인 신청 시	0		위임장	공급신청 자(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추가사항	0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

	서류	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해당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0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서류 발급
71.71.71				배우자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가점제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청약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0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0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상세" 발급
		0	7007400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포함하여
	\circ			본인	"상세" 발급
		_		피부양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 이상 부양)
		0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피부양	
		0		직계비속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1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0			본인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또는	но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계약자의 '본인 발급'인감증명서에 한함.
	0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0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f '상세'로 발급
				피부양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3년 이상 부양)
		0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 사항(3년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피부양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0		직계비속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0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이바고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 만 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공급		0		직계비속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0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요양시설,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체류한 경우)인 경우
				피부양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직계존비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 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0		속	- 면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배우자	
				제외)	경우 >>> 즈마드로바흐 저게 표시 기르대조이오 단처된 새녀왕이보다 취계까지로 성정
			해외체류(단신부임)관련 증빙서류	보이 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7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본인만) 국위에
		0	에피세ㅠ(한한구함)한한 등당시류	는건 곳	■ 구곡ot에 근한 ㅠ곡」제4포/항에 크기 ㅎ곱시(ㅎ~한당시)가 ㅎ집에 ㅎ시아가 뉘어서 꼭겁(논한단) 폭취에

	서류	유형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세대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 표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참조]
		0	복무확인서	본인 ■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 명시
		0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 소유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택 • 미등기 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부적격		0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주택임을 확인하는 공문 해당 - 관화 지자체에서 방급한 청고 및 명신은 항인하는 공모
통보		0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해당 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철거 및 멸실을 확인하는 공문
받은자		0	기타 무주택자 증명 서류	해당 • 주택공시가격증명원, 실거래신고서, 미분양 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서 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	당첨사실 소명 서류	해당 주택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제3자	0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용도: 아파트 서류접수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불가
대리인 신청시	0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추가사항	0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받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출)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해외근무자(단신부임) 입증서류(※ '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

구분	서류 필수	유형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0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0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출입국 기록 출력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하여 발급
		0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배우자 및 세대원전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연간 183일 초과)을

구분	서류 위 필수	유형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0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해당직장세무서
근 로 자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 : 직인날인)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는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자 영 업 자	법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 전년도 재무재표 원본(직인 날인) ④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⑤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해당직장세무서등기소
^r	신규사업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u> </u>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	해당직장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Н	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② ①이 없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전년도 1월 1일 ~ 입주자모집고일 현재까지 무직인 경우) (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1월1일 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견본주택 ■ 세무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자료	발급처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기타 (근로자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세대 한함)	①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기간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 거주지 관할구역 고용센터 ■ 해당직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전원의 소득 입증서류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3) 참고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구분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입증서류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간이 과세자 중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납입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부본)	해당직장세무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합니다.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포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 건강보험공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 증명 제출자에 한함)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해당직장세무서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하여야 합니다.
- 소득관련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분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등기부등본 (*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발급)	①,② 등기소(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포함)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서울시ETAX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 소유 현황'이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없는 경우	2T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기간 및 계약금 납부안내

8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1차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계약일정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5.01.13.(월) ~ 2025.01.15.(수) 10:00 ~ 16:00	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501번지 트리븐 논산 견본주택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 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합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 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

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합니다.
-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IM뱅크	504-10-608705-2	(주)한국토지신탁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78	7	제출유형	70112	ル フッス	나라바소마사 마 사고 오이나하고 사내지
구분	필수	추가(해당자)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필수 해당자
	0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0		자격검증서류	본인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완료자는 제외)
		0	추가 개별통지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0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에「아파트계약용」으로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대체 가능
본인계약시	0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계약시서명으로 대체
	0		계약금입금증	본인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0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구중선기대계측선포시 	<u> 근</u> 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의거하여 제출을 의무화 함
	0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본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ㅁᄌ테 시머니크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부적격 당첨		\circ		해당주택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ㅜㄱㄱ ㅇㅁ 통보자		O	무주택 소명서류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등포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0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기관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아래서류 추가 제출
THATI	0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제3자 대리인	0		인감증명서	계약자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계약 불가)
네티컨 계약시	0		인감도장	계약자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에는 생략
	0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0		인장	대리인	- 서명가능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13.)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 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 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함(대리접수 불가)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 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 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2022.12.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제24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2022.12.29.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부정 당첨자로 관리가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 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논산시 및 충청남도 또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관련법규 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등은 최종 사업계획(변경포함)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인 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니트 및 단지내 모형 및 홍보물 일체(POP, 이미지외)는 소비자(분양자외)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시공시 달라질 수 있음.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 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상의 조감도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에 준함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02.28.시행) 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에서 일괄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관련법에 따름.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점검 받으시기 바람
- 각 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의 계약시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 할 수 있음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부적격자는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 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 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시 중도금 대출시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며,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습니다.
-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직접 납부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행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자가 대납하던 중도금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 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 조건 등 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율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 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01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2021.02.02.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 주가 가능한날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최소 45일이상 제공될 예정이며, 실제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제 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 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 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 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관한 사항

-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부대복리시설: 시니어하우스(경로당),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멀티라이브러리(작은도서실),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게스트룸(1개실), 키즈스테이션, 어린이놀이터 등 ※ 시설내 운동기구 및 집기류, 가구, 도서 등은 실제 시공시 수량 및 종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리 및 운영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진행 예정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9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 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 (80%)	비고
작곡표기	0007	계약시	2026 년 03 월 10 일	입주시	11 <u>12</u>
59	12,100,000	1,210,000			
84A, 84B, 84C, 84D, 84E	16,500,000	1,650,000	1,650,000	13,200,000	
108	22,000,000	2,200,000	2,200,000	17,600,000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135	135 26,400,000 2,640,000 176 35,200,000 3,520,000		2,640,000	21,120,000	
176			3,520,000	28,16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IM 뱅크	504- 10- 608705- 2	㈜한국토지신탁

- ※ 지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 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 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 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

■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은 세대별로 계약하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시 진행할 예정이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평면구성 및 제공품목이 변경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고 실별, 위치별로 선택시공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세금(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무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시 또는 유상옵션 시 제공되는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확장위치 및 마감재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달로그 또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 축소됨).
-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및 일부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품목, 유상옵션 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유상옵션 품목(설치사항, 규격), 견본주택의 연출용(전시품목 등) 및 공 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TV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승인 시 제출하는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기본 마감재 이외에 유상옵션 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제공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 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발코니 확장부위 창호 기본 사양은 아래와 같음.

구	구 분 내부창호		외부창호	기 타 사 항	비고
기	보형	-	22mm 로이 일면복층유리 이중창 PVC 이중창 (내부 로이복층유리 + 외부 로이 복층유리)	발코니 창 없음	
	안 방	26mm 로이 일면복층유리 PVC 단창 (내부 복층유리 + 외부 로이복층유리)	22mm 로이 복층유리 PVC 단창 (내부 복층유리 + 외부 로이복층유리)		
	거 실	-	22mm 로이 일면복층유리 PVC 이중창 (내부 로이복층유리 + 외부 로이복층유리)		로이유리는 1면 적용으로 해당 부위는 현장여건 및 성능 등을
확장형	침실, 주방, 드레스룸	-	22mm 로이 일면복층유리 PVC 이중창 (내부 로이복층유리 + 외부 로이복층유리)	135타입 주방창은 프로젝트 단창으로 설치됨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	22mm 로이 복층유리 PVC 단창 (내부 일반복층유리 + 외부 로이복층유리)	84D타입 다용도실 창은 프로젝트 단창으로 설치됨	

-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발코니 외부샤시는 타입, 창호 위치에 따라 규격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및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세대 발코니에는 전용면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며, 확장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함(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하향식피난구 또는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 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 섀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수전이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및 배수/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벽·천장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 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벽체·천장 마감재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추가 선택 품목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일정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	하나은행	542- 910035- 25204	㈜한국토지신탁

	납부일정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6 년 03월 10 일	입주지정기간							

-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계좌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 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 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

■ 추가 선택 품목(유상 및 무상 선택옵션)

- 1. 시스템 에어컨(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 가) 시스템 에어컨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약식	옵션	실내기	에이커 서취 저용시(시미기)	πιου οι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제조 업체명
표기	선택	쓸대기	에어컨 설치 적용실(실내기)	판매가	계약시	2026년 03월 10일	입주지정일	제소 합세명
59	선택1	2	거실+침실1(안방)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59	선택2	4	거실+침실1(안방)+침실2+침실3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선택1	3	거실+식당+침실1(안방)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84A	선택2	5	거실+식당+침실1(안방)+침실2+침실3	7,900,000	790,000	790,000	6,320,000	
	선택3	6	거실+식당+침실1(안방)+침실2+침실3+알파룸	8,600,000	860,000	860,000	6,880,000	
	선택1	3	거실+주방+침실1(안방)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84B	선택2	5	거실+식당+침실1(안방)+침실2+침실3	7,900,000	790,000	790,000	6,320,000	
	선택3	6	거실+식당+침실1(안방)+침실2+침실3+알파룸	8,600,000	860,000	860,000	6,880,000	
84C	선택1	3	거실+주방+침실1(안방)	4,900,000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04C	선택2 5		거실+식당+침실1(안방)+침실2+침실3	7,500,000	750,000	750,000	6,000,000	
84D	선택1	3 거실+주방+침실1(안방)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04D	선택2	5	거실+식당+침실1(안방)+침실2+침실3	7,500,000	750,000	750,000	6,000,000	삼성전자
	선택1	3	거실+주방+침실1(안방)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84E	선택2	5	거실+식당+침실1(안방)+침실2+침실3	7,900,000	790,000	790,000	6,320,000	
	선택3	6	거실+식당+침실1(안방)+침실2+침실3+알파룸	8,600,000	860,000	860,000	6,880,000	
	선택1	3	거실+식당+침실1(안방)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108	선택2	5	거실+식당+침실1(안방)+침실2+침실3	8,330,000	833,000	833,000	6,664,000	
	선택3	6	거실+식당+침실1(안방)+침실2+침실3+알파룸	9,520,000	952,000	952,000	7,616,000	
	선택1	3	거실+식당+침실1(안방)	5,300,000	530,000	530,000	4,240,000	
135	선택2	5	거실+식당+침실1(안방)+침실2+침실3	8,330,000	833,000	833,000	6,664,000	
	선택3	선택3 6 거실+식당+침실1(안방)+침실2+침실3+알파룸		9,520,000	952,000	952,000	7,616,000	
476	선택1	3	거실+식당+침실1(안방)	4,900,000	490,000	490,000	3,920,000	
176	선택2	8	거실(2개소)+식당+침실1(안방)+침실2+침실3+다목적실+취미실	13,300,000	1,330,000	1,330,000	10,640,000	

나) 시스템 에어컨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하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 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단종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 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시스템 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음.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냉매 매립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되며, 시스템 에어컨 계약 이후 선택 취소 시, 기본제공 품목인 냉매 매립배관의 시공은 불가하오니 양지 바람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거실 및 안방)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의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에어컨 냉배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으며, 모델도 상이함.

2. 추가 선택 품목(발코니 확장 시 선택 가능 / 계약금 10% + 2026년 03월 10일 중도금 10% + 입주 시 잔금 80%)

가) 인테리어 (단위 :원, **VAT**포함)

구분			미선택 시	플러스옵션		주택형별 단가								
	1 4		미선탁 시		스타인	59	84A	84B	84C	84D	84E	108	135	176
	거실/식당 /알파룸	바닥 타일	강마루	표 베리티이/주	국산, 600*600)		2,000,000	2,000,000				2,400,000	2,600,000	
	거실/식당 (알파룸 제외)	미국 대로	8 UI T	<u> </u>	,		1,800,000	1,800,000	1,600,000	1,600,000	1,700,000	2,200,000	2,200,000	1,700,000
	다용도실	다용도실 수납가구	-	PET 표면재+MMA 상판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2,100,000	1,800,000	1,200,000
		알파룸 가변형 벽체	경량벽체+목문	유리월(AL F	rame + 유리)							4,200,000	3,700,000	
개 별	침실	(108/135타입)	+거실 1면 기본 포세린타일	,	+ 유리) + 거실 벽지 ! 천장 간접등 미적용)							,,	,,	
옵 션		붙박이장	-		(침실 3) <i>타입)</i>	1,5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현관	중문	-	3연동 슬라이딩 (59, 84A,84C, 84D, 84E, 108, 176타입) 여닫이 유리문		1,700,000	1,700,000	1,5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700,000	1,500,000	1,700,000
				(84B, 1	135타일)									
	안방	파우더+드레스룸 도어	목문 or 드레스룸 가구 도어		+ 패턴유리 <i>타입)</i>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600,000
	욕실	일체형 비데	공용 : 투피스양변기 부부 : 원피스양변기	일체형	비데(2개)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800,000
	알파룸 or 침실2	시스템 선반 (포스트+선반)	-		반형 84C 타입)			1,200,000	1,600,000					
마 감	거실	아트월 1면	중국산 포세린 타일 (600*1200)	알파룸 유리월 미선택 시 (108/135 해당)	세라믹 박판 패널(중국 산, 6T) (135타입은 가변 유리 월 선택 시 선택 불가)							5,500,000	4,900,000	
빠 화	거실/복도	패널	도배 아감	PET or 시트 + 픽처레 알파룸 유리월 선택 시 (135대입은 가변 유리 (108/135 해당) 월 선택 시 거실은 선택 불가)		4,200,000	4,300,000	4,300,000	4,500,000	4,900,000	2,900,000	4,400,000	2,800,000	4,500,000

	주방		도배 마감		PET or 시트 + 픽처레 일 몰딩 (59, 84D.135, 176 타 일)									
수	침실 1	드레스룸 선반	일반 포스트+선반 (패널형 선반 없음)	패널+선반형_일부조명 <i>(전 타임)</i>										
비 빠 하	욕실	세면대 하부장	독립 세면대		구 일체형 <i>타입)</i>	2,900,000	3,500,000	3,500,000	2,600,000	2,600,000	2,600,000	5,300,000	4,200,000	3,600,000
					쿠장 <i>입 / 부부욕실)</i>									
조		우물천장	천장지 마감+일반 직부등		배널 + 리니어 조명 <i>타입)</i>									
BO 빠	거실/식당	아트월 간접조명	천장지 마감		적용 <i>(전 타입)</i>	2,500,000	3,500,000	3,500,000	3,000,000	3,300,000	3,300,000	3,800,000	3,300,000	3,300,000
화	주방	디자인 조명	일반 매입등	매입형 LED조명 <i>(전 타입)</i>										
		상부 플랩장	손잡이 없는 일반 상부장(PET 표면재)	유리마감 + <i>(전</i> 1	+ LED 조명 <i>타입)</i>									
주		하부 아일랜드	일반 하부장(PET 표면재)		임) + LED 조명 (전 타입) 디자인 특화									
助 脈 跡	주방 가구	주방후드	일반 침니형(가구 매입)		병 후드 08, 135, 176 타입)	2,000,000	4,200,000	5,0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1		유리 장식장	주방상판 위 오픈 장식장 (조명 없음)	(84A, 84B EFE	• LED 조명 입 <i>: 상부장측면)</i> 타입 :키큰장)									
		알파룸 도어	목 슬라이딩 도어	유리 슬리 <i>(84A. 8</i>	바이딩도어 34B 타입)									
주 방 특	주방	벽체	벽체 : 타일(300*600)	세라믹 박판 패널(중=		3,0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3,000,000	3,000,000	4,500,000	4,700,000	4,000,000
화 2	특 마감 화	상판	상판 : 인조대리석(MMA)	(²	타입)	5,550,000	5,000,000	5,550,000	5,550,000	5,550,000	5,000,000	7,500,000	7,700,000	4,000,000

나) 가전 (단위 :원, VAT포함)

	구	부	미선택 시	플러스옵션	선택					주택형별 단가				
	I E		-12-4-11	2-1-8 C		59	84A	84B	84C	84D	84E	108	135	176
		키친핏+키큰장	오픈형 냉장고 장 (선반 없음)	LG전자 / 컨버터블 패키지(이지핸들) 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 (BC1L1AA+BC1F1AA+BC1K1AA1)	통합	4,300,000	4,500,000	4,500,000	4,300,000	4,300,000	4,300,000	6,100,000	6,100,000	4,300,000
	주방/식당	빌트인 김치냉장고 +키큰장	오픈형 김치냉장고 장 (선반 없음)	LG전자 / 김치냉장고(RSK221JVPL/R)	통합	1,9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가전		인덕션(3구)	경동나비엔 / 3구가스 쿡탑(GRB-4003)	디트리쉬 / 인덕션 (DPI4330B) - 가스배관 미시공 -	-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1,800,000
		식기세척기	수납장	삼성전자 / DW60T7065SS	-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1,200,000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	-	코스텔(주) / 천장형 제습기(CDD-600B)	-	780,000	780,000	780,000	780,000	780,000	780,000	780,000	780,000	780,000

다) 무상선택 품목

약식표기	선택	нга	
	선택 1	선택 2	미프
84B	침실형(시스템 선반 등 가구 없음)	알파룸 + 펜트리형(시스템 선반 제공)	공사 일정상 일정 기간 미선택 시에는 "선택1"로 시공됨

라) 추가선택 품목 유의사항

(1) 공통 유의사항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본 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조건(납부금액 또는 납부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됨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소요자재를 선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 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최종 일정은 분양계약 시 또는 별도 통보 예정임)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자재공급 지연, 품절, 품귀 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는 추가 선택품목이 전체로 반영된 "풀옵션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발코니 확장 시 기본마감과 추가 선택옵션 내용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내의 POP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인조대리석, 각종 타일 등의 패턴은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은 다소 다를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견본주택 시공내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세금(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추가 선택품목은 품목별 계약금이 상이하며, 계약 전 반드시 계약금 및 계약조건, 납부일정, 납부계좌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입주자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주택공급 계약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부가가치 세가 포함되어 있음)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인허가도면, 홍보물 등의 가구 및 가구표현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 및 계약 시 선택한 사항이 우선하므로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주방가전 선택 시 유의사항

- 키친핏 가구 옵션(냉장/냉동/김치) 선택 시와 맞춤형 키큰장은 일괄계약 품목으로 분리하여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확장 선택 시 계약자분이 개별로 일반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설치할 수 있는 일반 장이(선반 없음) 시공되고, 키큰장은 제공되지 않음. 또한, 일반장의 형태와 규격 및 마감 기준은 타입별 상이하여 개별로 설치하시는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 일부 기종은 설치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 계 약전 반드시 사이즈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빌트인 김치냉장고 선택 시 키친핏 옵션을 중복 선택할 수 없음
- 식기세척기 유상옵션 선택 시 바닥, 벽에는 별도의 마감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전(식기세척기) 미선택 시 주방가구의 크기 및 형태가 달라지며, 도어장 형태로 제공됨
- 인덕션 미선택 시 가스 3구(경동나비앤) 가스쿡탑 제품이 설치되고 주방에 가스배관이 노출되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인덕션 설치 시에는 주방에 가스배관 미시공)
- "주방특화1" 선택 시 인덕션을 미선택할 경우, 독립형 후드가 반영되므로 가스 쿡탑 설치에 따라 가스배관이 노출됨

(3) 개별/마감/조명/수납특화 선택 시 유의사항

- 거실/주방, 복도 바닥타일 미선택 시 일반 강마루가 설치되며, 옵션금액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임
- 84A, 84B, 108, 135 타입의 경우는 알파룸 유리문 또는 복도 유리월 특화 선택 유무에 따라 바닥타일과 강마루 적용 내용이 상이하며, 알파룸 유리 슬라이딩문(주방특화) 또는 복도 유리월(개별옵션) 선택 시 바닥타일이 적용됨(알파룸 목문 슬라이딩 또는 별도의 침실로 구획되는 실은 바닥타일이 미적용되며, 176타입 지하층은 바닥타일 선택에서 제외임)
- 바닥타일 유상옵션 선택 시 타일 줄눈 나누기 및 패턴은 본 공사 시 지재의 특성, 시공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침실3" 붙박이장 선택 시 타입별 침실 폭에 따라 가구 디자인, 규격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음
- 거실 아트월의 세라믹 박판패널, 주방의 세라믹 박판패널, 바닥타일 등의 옵션품목은 제품특성상 시공방법에 따라 견본주택과 세대별로 색상, 패턴, 줄눈나누기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품 질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복도 및 거실 등의 벽체패널 미선택 시 벽지 및 일반몰딩으로 시공되며, 패널 나누기 및 돌출길이가 상이할 수 있음
- 벽체 패널마감은 본 공사 시 접합부의 돌출, 들뜸현상, 고정하기 위한 타카(못)자국이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음
- 벽체 패널마감 선택 시 시공되는 벽면은 일부 특정된 벽면만 시공되므로 견본주택 또는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135타입은 거실 창호로 인해 알파룸 유리월 선택 시 거실 벽체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에도 기본 마감은 타일이 아닌 벽지로 적용되며(유리월 유상옵션 가격에 반영), 아트월 타일이 미적용되므로 천장 간접등 및 세라믹 박판패널 유상옵션도 미적용됨
- 거실 아트월 천장 간접박스 시공 시 조명효과 및 유지보수를 위해 조명기구가 노출되어 보일 수 있으며, 소방배관으로 인해 높이가 축소될 수 있음
- 조명특화 선택(우물천장, 시트패널, 거실 아트월 간접등, 주방 라인형 매입 조명, 거실 및 식당 리니어 조명) 시 제공되는 품목은 미선택 시에는 특화 마감은 미반영되며, 조명류는 거실, 식당 및 주방은 일반 직부등이 시공됨
- 조명특화 선택 시 함께 반영되는 우물천장 시트패널(흡음효과 있음)은 실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방향이 변경될 수 있고 자재의 특성에 따른 이음선이 발생할 수 있으며, 미선택 시 거실 우물천장 은 일반 천장지로 마감됨
- 붙박이장 선택 시 가구 내벽에 바닥재(난방 포함).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미선택 시 도배 마감으로 시공됨
- 추가 선택품목 중 현관 중문 및 침실과 복도 또는 거실 간에 설치되는 알루미늄 유리 칸막이(108, 135타입) 및 드레스룸 출입문(1도어 슬라이딩 타입)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분리 및 시야 차단의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현관 중문 및 복도 또는 거실 간에 설치되는 알루미늄 유리 칸막이 및 출입문(1도어 슬라이딩 타입)은 주택형별 사양(개폐위치, 사이즈 등)이 다르며, 본 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 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현관 중문 미선택 시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 위치, 도어 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타입에 따라 신발장과 이웃하여 벽체가 조성됨
- 욕실특화 추가 선택 시 제공되는 욕실 하부장은 미선택 시에는 독립형 세면대만 설치됨
- 욕실 개별 선택 품목인 일체형 비데는 2개소 일괄 선택이며. 미선택 시에는 공용욕실에 투피스양변기, 부부욕실에 원피스양변기가 설치됨
- 고급 드레스룸 선택 시 벽면은 패널마감이며, 벽체 석고보드가 추가 시공될 수 있어 실제치수 및 안목치수가 축소될 수 있음
- 개별선택 사항 중 84C/84E 타입 침실 및 알파공간 시스템 선반 미선택 시에는 가구문 미설치 및 해당 실과 동일한 도배로 마감됨

(4) 주방특화 선택 시 유의사항

- 주방 상부장 및 아일랜드 주방("ㄷ"자형 식당면 하부장 포함) 디자인 특화, LED 라인 조명, 벽체 및 상판 세라믹 박판패널, 독립형 후드(일주 타입)이 패키지형 옵션으로 미선택 시에는 상하부장 일반 PET 표면제 및 손잡이 없는 여닫이형 가구 도어, 주방벽 일반 지정타일, 상판 MMA로 반영되며, LED 라인 조명은 미반영되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84A. 84B 타입에 적용되는 알파룸 슬라이딩 유리문은 주방 특화 디자인을 고려한 동일 패키지로 미선택 시에는 일반 목슬라이딩 도어로 시공됨
- 주방 특화 옵션은 고급형 디자인 특화에 따라 기본형 가구 대비 수납공간이 축소되며, 수납 선반 형태도 상이하므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주방 장식장 및 주방가구의 조명 스위치 위치 및 형태는 본 공사 시 시공성 및 품질향상을 고려하여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
- 주방 장식장 미선택 시 조명없는 상판 위 오픈형 장식장이 제공됨
- 견본주택에 시공된 주방상판 및 벽체(유상옵션 품목)의 세라믹박판 패널의 패턴 및 나누기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절단에 의한 접합 라인이 발생함

•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는 주방가전 제품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 임의로 지정할 수 없음

10

유의사항 및 단지 내외부 여건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공통사항

공통사항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 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2째 자리로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당 사업지는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및 최종 측량성과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 까지 상호 정산키로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시설, 조망권, 주변개발여건, 유해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추가 유상옵션이 전부 반영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 옵션형 및 발코니확장 시 제공되는 기본마감에 대한 마감내용은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다록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조감도, 투시도, 각종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주변현황, 부지의 고저차 등),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당 사에 확인 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실입주일이 만료일보다 앞서는 경우 실입주일)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 가스비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함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쇼파 설치 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있음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 조경 공간(포장패턴, 식재, 놀이터를 포함한 시설물, 수경시설 등),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차량 동선 등)등은 실시공시 인허가 관청 협의나 공사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평면, 입면, 마감재 등) 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 추후 인허가 변경 시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등
 -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및 수공간, 어린이놀이터(유아놀이터 1개소, 일반 1개소, 물놀이터 1개소), 옥외 주민공동시설, 휴게시설 및 키즈스테이션, 문주,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한전패드(단지의 전력공급을 위해 한전에서 설치 요구 시 설치됨), 포장
 - D.A(환기구), 주차 경사로 지붕, 외부계단, 비상차량동선, 소방전용구역, 단지 레벨차에 따른 출입구 위치 및 조경 등의 디자인, 위치, 개소
 - 기타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계획승인 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사업계획승인 변경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예정임)
- 입주 예정 주택이 동간 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체결 이후, 단지 내(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지상 쓰레기 관련시설, 단지 내 도로 등) 및 단지 주변 방음벽, 단지 외부 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현장 여건, 인허가 관청의 협의 등에 따라 주변시설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인허가 관청 협의에 따라 목재형 방음벽으로 반영될 경우, 저층부 세대의 조망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사업계획변경승인 포함)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재 및 부대편의시설, 단지 조경(수목, 수공간 및 시설물), 커뮤니티시설 내부 운동기구 및 가구 등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입주 후,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도로, 건축물 및 시설물, 공동주택 등으로 인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주변 개발계획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

• 본 사업장 내 도시가스는 중부도시가스를 통하여 공급 예정 •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주)한국토지신탁"와 "(주)건우씨엠"간에 신탁계약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되는 시점 또는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의 명의로 이전된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본 건축물에 대한 분양계약 관리와 "(주)한국토지신탁"의"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주)건우씨엠"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 • 각종 인쇄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단지여건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형과 확장형의 마감째 내용이 상이하며, 일반형과 플러스옵션도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형은 거실 아트월 타일, 우물천장, 각종 시스템가구, 발코니 창호, 전기오븐, 전동빨래건조대, 주방 상판 콘센트 등이 미제공이 되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반드시 마감 내용을 확인하시기 • 단위세대 마감재는 주택형별에 따라 재질, 색상, 패턴, 크기 및 길이(가구 포함), 형태, 공간별 적용 아이템 등이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카달로그에 반영된 평면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침실벽체 알파룸 유리월 유상 선택형은 108/135 타입에 해당되며, 유리월 선택 시 알루미늄 프레임 색상 및 창호 형태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침실 구분형 경량벽체 선택 시 기본 마감은 벽지와 침실 목문임(135타입 알파룸 유리월 선택 시 거실 아트월은 거실 2면 창으로 인해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기본 마감에 포세린 타일 적용이 불가하여 거실 전체 벽체에 벽지가 적용됨) • 욕조 설치면에는 타일이 미시공되고 타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고, 배수구는 욕실 내에 1개소만 설치됨 • 견본주택 복도 및 거실 벽체에는 플러스 옵션인 페트 또는 시트 패널, 복도, 거실 및 주방 바닥에는 플러스 옵션인 타일, 거실 및 식당 벽체에는 플러스 옵션인 세라믹 박판 패널, 식당 및 거실 천장에는 플러스옵션인 우물천장(시트패널 마감 포함)과 리니어 조명, 주방 천장 특화 조명, 거실 아트월 벽체 간접등, 주방에는 플러스옵션인 유리와 조명이 조화된 상부장과 장식장(일부 타입 독립형 후드 포함), 주방 상판 및 벽체 세라믹 박판 패널 등이 시공되어 있으므로 고급형 플러스 옵션 미선택 시 적용되는 기본 마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욕실장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하부(난방 포함) 및 후면.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마감재 - 주방가구 하부(난방 포함) 및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에 적용된 일반가구는 견본주택 용으로 본 공사 시 동일 마감 및 디자인으로 반영되며, 안방 드레스룸 플러스 옵션 가구는 지정 업체이나, 본 공사 시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수급문제 등이 발생 시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될 수 있음 • 세대에 적용된 타일의 경우, 동일한 제품이나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달리 패턴(세라믹 박판 패널은 자재 특성상 세대별 패턴이 상이함), 색상, 나누기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타일 마감벽체의 모서리에는 코너비드가 시공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됨 • 내외부에 천연자재가 적용되는 경우,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견본주택에 시골된 마감자재 중 사업주체와 시골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골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플러스 옵션인 빌트인가전 등이 설치되는 천장, 바닥(난방 포함), 벽체에는 마감재가 적용되지 않음 • 유상옵션인 거실 아트월(주방 상판 및 벽체, 바닥 타일 포함) 타일의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고,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목창호, 시트패널(유상 옵션) 등의 고정을 위해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이 개선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천장 몰딩은 유상옵션 품목인 벽체 패널 선택 시에만 픽처레일 몰딩이 시공되며, 미선택 시에는 일반 몰딩이 시공됨 • 세대 내부 각 실 안목치수는 발코니 비확장형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다소 축소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유상옵션이 전부 반영된 "풀옵션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브랜드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일정기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포함 품목(분양승인 신청서류 기준)과 전시품(조명, 가구, 그림, 장식물, 각종 소품 등)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분양승인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됨(커뮤니티시설 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아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가스 정압기, 대양열 집열판, 근린생활시설 옥상 조경, 실외기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세대 모형도 실제 마감재 칼라와 다른 모노톤에 기본 확장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 홀 및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서(공사 중 사업계획승인 변경도서 포함)에 준함 /홍보물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전시조명,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책상 및 의자, 식탁 및 의자, 소파 및 테이블, 화장대 의자 등 포함), 백 패널 및 장식물, 그림,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건조기, 밥솥, 다용도실 인덕션, 토스터, 커피머신, 의류관리기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선흥통, 배수구, 점검구, 스프링클러,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콘센트 및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온도조절기,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난방불가) 시스템에어컨(삼성전자)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홈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으로 사이버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과 전시용 조명, 설비 등은 부속배선·배관을 포함하여 시공·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세대입구는 전시용 프레임이 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 시 현관문를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음.

**학교관련 유의사항

• 본 공동주택 통학구역은 논산동성초등학교입니다.

• 다만, 사업대상지가 논산동성초보다 논산중앙초가 가깝고, 중기배치계획검토 결과 논산중앙초에서 학생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아 추후 통학구역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향후 학생배치계획 및 배정방법 등은 관할청 및 교육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입학 배정학교, 시기 등은 직접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관련 유의사항

-	1 분	내 용			
설계변경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4/5 이상의 동의를 받는 사항 외의 사업계획승인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변경처리 후 사업계획승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변경완료 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형식 등은 굴토 및 지내력 테스트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 2층 주차장의 택배차량 출입을 위한 천장고 확보를 위해 보의 높이가 구조계산을 통해 동등 구조 성능을 확보하여 축소될 수 있음			
단지	FO PO	 ● 아파는, 근단생활시설 및 '무대부리시설 등의 의료(디자인(미상)의 되면, 보고 있는 성도, 성도 시설 등이 실시하고 및 복어, 중 시설 가는 생하지, 5억에 의원 기본 및 복어, 조시 등이 사용 기본 및 복어, 중 시설 등에 의용 기본 및 복어, 중 시설 등에 의용 기본 및 복어, 중 시설 등에 의용 기본 등에 의용 기본 등에 의용 기본 기본 등에 의용 기본 기본 등에 의용 기본 기본 등에 의용 기본			

-		TH CIT HAN HARD MATRITO HAR CARAS ALL HACE HOW OF OAR DI HON STEL
		• 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는 예술장식품은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분양 이후 위치 및 내용이 확정됨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트리븐 홈페이지에 반영된 시설 및 아이템은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트리븐 논산에만 적용되는 아이템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함
		• 단지 북측 부출입구에 면하는 도시계획도로는 공사완료 후 기부채납 예정으로 개설 후 불법주차 등으로 부출입구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와 인접한 고층 빌딩으로부터 야간의 빛공해 및 환경권(일조, 조망, 소음,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해 계약 전 견본주택과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함
		• 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단지주변 경계부는 현장 시공여건, 현황 레벨, 인근 도로레벨, 방음벽 등에 따라 단차부 마감에 대한 형태, 재질 등이 실시설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일체
		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문주, 도로선형, 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 이동, 형태 등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하 2층(주차장 진출입층)에 반영된 무인택배보관함(세대수의 약 10% 설치)과 자전거보관소의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공사 시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지하 2층은 택배차량을 고려하여 천장고(약 2.7m)가 계획되어 있으나, 본공사 시 설비배관에 의해 일부 높이가 낮아질 수 있음
		• 단지 레벨 계획상 103~106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주차장은 단지 레벨상 지하 2층 주차장 주출입구를 통해 이용할 수 있고, 지하 1층 주차장은 101, 102, 107동에서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배치	101, 102, 107동에 위치한 지하 3층의 경우도 지하 2층 주차장 주출입구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103~106동에 위치한 동에서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의 동별 주차 배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없으며, 각 동 출입구까지의 동선 길이와 전실 및 홀의 형태, 크기 등이 다름
		• 단지 주변 도로와 단지 내 레벨 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CI 및 BI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신축되는 인접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의해 조망 및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주동 주출입구 흘,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단지 내 외부에 계획된 대지레벨 차이에 의해 반영된 옹벽, 조경석, 난간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형태, 크기, 길이,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공공의 목적으로 통행되는 필로티 상부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커뮤니티 마당, 어린이 놀이터(102동 전면부 일반 및 유아 1개소, 105동 앞 물놀이터 1개소), 옥외운동시설, 관리동,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인접한 세대는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크기 및 위치(홀 및 계단실 5개층마다 1개소에 설치되는 자동폐쇄장치 설치 포함)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옥상 태양광 설비 설치 해당 동은 102, 103, 104동 총 3개동에 반영되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동 저층부의 석재마감 패턴 및 줄눈의 간격은 디자인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장 외벽 등에는 일부 석재뿜칠 도장이 적용됨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코아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 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콘크리트 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 폭, 연결층 및 층수는 각 주동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지하층 출입구까지 접근 동선이 주차구획, 장애인주차구역 등으로 일부 동은 다소 불편할 수 있음
		• 아파트 로비, 필로티(벽 및 기둥 석재뿜칠 도장), 공용홀 등의 평면과 입면 계획(재료, 디자인 등)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옥상난간 턱 높이,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주동 지하층 출입문 및 1층 로비 방풍실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폭이 변경될 수 있음 │ • 주동 필로티층 상부에는 주택관련 법규에 따라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 외부 입면의 형태(옥상 조형물, 외벽줄눈 문양, 저층부 석재, 동 출입구), 재질 및 색채 등은 구조내력확보,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노출 설치됨
급시		• TV 공청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방재실과 가깝고 전파수신이 양호한 아파트 지붕(옥상)에 설치됨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 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라 옹벽, 보강토블록, 자연경사 처리구간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없음
	주동	• 지하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에 상부 실로 인해 설치되는 단열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야간경관조명 설치
		시 이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상승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보도, 차로, 비상차로, 쓰레기수거차량동선 등의 설치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계약 바람
		•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규격·사양은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동번호 등이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모형과 홍보물과 달리 변경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과 엘리베이터홀 천정부분 등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음
		• 제연구간에 해당되는 엘리베이터 홀과 연계된 단위세대 현관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지붕에 설치되는 우수 처리를 위한 배수구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개소가 축소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건물의 높이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106동을 포함한 일부 동은 주동 주출입구에서 단지 중심부(놀이터 등)까지 동선이 길거나 불편할 수 있으므로(피로티 미설치, 차량동선과의 중첩 등), 계약 전 견본주택과 모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함
		• 모형 및 각종 홍보물(분양 카달로그,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내외부 디자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
	부대복리	
	시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면적 변경이 계약체결 이후 일부 발생할 수 있음
		• 경비실 및 차단기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시설	• 노인정, 게스트룸, 키즈스테이션 등은 지하주차장과의 방화구획 기준에 따라 경계벽면에 개구부가 미설치됨
	<u> </u>	• 커뮤니티,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의 실외기는 외부 또는 지붕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의 환경권(조망, 일조, 소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쓰레기분리수거(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함 미설치) 및 생활자원보관시설, 주차장의 운영·유지·보수·관리 방안은 추후 관리주체가 결정하여 운영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모든 주차구획은 구조적으로 동별, 세대별로 구획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차구획 운영
		은 관리주체 책무임
		• 차량진출입, 경사로 부분은 차량통행 시 차량경고등 및 경고음, 노면마찰음 등 으로 인한 빛 공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장 차로 높이와 주차구획 유효높이는 분양 후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부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의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규모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으며, 형태, 색상, 외관, 마감째,도로에서의 진입 레벨 등도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옥상부와 커뮤니티 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옥상부에 실외기가 설치됨으로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실외기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계약자의 경우,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면적 과다, 공용시설물(진출입구 등) 공동사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관리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관련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지하층 출입구까지 접근 동선이 부대복리시설, 주차구획, 장애인주차구역 등으로 일부 동은 다소 불편할 수 있음
		• 「 건축법시행령 」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설치됨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음
		• 단위세대의 거실 및 청실의 천장고는 2.300mm이며(84E 타입 펜트리 및 드레스룸 천장고는 2.100mm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안목치수는 발코니 비확장 시 마감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발코니 확장 또는 유상옵션 마감 적용에 따라 각 실별 내부 안목치수가 다소 축소될 수 있음
		· ·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서비스 발코니면적 중 전용면적에 포함되는 면적은 59 주택형 1.6150㎡, 84A 주택형 1.0411㎡, 84B 주택형 0.9499㎡, 84C 주택형 5.0023㎡, 84D 주택형 0.7525㎡, 84E 주택형 1.7565㎡, 108 주택형
		9.4615㎡, 135 주택형 5.6965㎡, 176 주택형 1.0411㎡ 로 반영되어 있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공간구성 및 형태, 마감재 수준 및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
		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PVC 창호 및 가구 등은 견본주택 용으로 본공사 시 입찰에 의해 동등 마감의 제품으로 선정하여 시공됨
		• 세대 충간차음 구조 및 기준은 2022년 8월 4일 이후 개정된 사후확인제 대상이 아닌 사전 확인제 대상(경량 58데시벨 이하, 중량 50데시벨 이하) 기준이 적용됨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소비자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는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 X과 역합 과기에 한아게 되므로 정대적으로 꾸위할 보실 두 X으나, 오마자의 현디구목으로 한번 아자로구는 자합구세에게 표구될 두 없음 • 단위세대 내부 및 세대 간 벽체 종류는 분양면적 내에서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함
		• 작업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세대간 벽의 임시 개구부는 세대간 소음기준에 충족되도록 조적벽 또는 경량벽체로 시공됨
		• 콘크리트 벽체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 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콘크리트 벽체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콘크리트 벽체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질 수 있음
단		• 타입별로 기본제공 품목 및 플러스옵션 품목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위		• 주동 저층부 석재 등 마감 적용 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음
세	공통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속동과 인접한 세대는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CH CH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ч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및 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람
		• 샤워부스, 욕조,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음
		• 복도 및 거실 벽체 패널 및 타일 선택 시에는 걸레받이 미시공되며, 벽체 패널 유상옵션 선택 시에만 일반 몰딩이 아닌 픽처레일 몰딩이 설치됨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욕실 및 발코니의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음
		• 단위세대 현관에 적용되는 현관 중문은 세대 내 인테리어를 위해 설치되는 품목으로 단열을 목적으로 하는 창호설치가 아니며, 바닥 및 천장에 프레임 및 레일이 설치됨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엘리베이터 홀 또는 복도에 창호가 없어 채광 및 환기가 부족한 세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 상담 및 도면을 확인하여야 함
		•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실에서 공급받아야 향
		• 시스템 에어컨 미선택 시 냉매 매립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되며, 시스템 에어컨 계약 이후 선택 취소 시, 기본제공 품목인 냉매매립배관의 시공은 불가함
		• 1층 정원 및 옥상정원(테라스 포함)은 관련규정에 따라 세대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임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콘센트, 단자함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선혹통의 개소와 위치는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는 배수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다용도실, 실외기실, 욕실, 현관, 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경우, 바닥구배 시공 및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에 따라 타일 나누기, 천장 높이 및 단차가 도면 및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오수 및 우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은 견본주택 내용에 따르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후드장 상부는 수납이 제한적임
		• 분전반, 통신 단자함, 콘센트, 통신수구 및 스위치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외벽 및 세대간벽, 총차이부분 등에 단열재가 설치되는 부위는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경량벽체인 경우,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항, 천장석고보드부위와 벽체석고보드부위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함. • 단위세대별 치수에는 천장 몸덩이나 하부 걸레받이 등의 치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심측을 통하여 가구 가전제품 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람 • 욕실벽(PD 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그릴의 경우 수동개폐형 제품으로 시공되며. 에어컨 가동전 반드시 입주자가 직접 개방 후 이용해야 함 •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계약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내 설치되는 통신 단자함, 분전함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노출시공 됨 • 세탁기 및 건조기 용량 및 모델에 따라 발코니 내 병렬 또는 상·하 직렬 배치가 불가하오니, 입주 후 배치를 결정해야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에 설치된 대피시설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발코니(실업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 및 선혼통이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거나 급수가 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 되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및 기타 발코니의 외부창호 및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세탁기/건조기 수직배치형 가구 유상옵션 미선택 시에는 일반 벽부착형 2단 선반이 설치됨 • 실외기실 내부의 선홈통 및 배수구는 우수 처리를 위한 것으로 위치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그릴 창호 형태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발코니에 설치되는 덕트, 에어컨배관,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음 발코니 • 안방 발코니에 설치되는 하향식 대피구는 층별. 세대별로 위치가 상이하며. 이에 따라 전동빨래건조대 위치도 층별. 세대별로 상이함 • 안방 발코니에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방수를 고려하여 다소 돌출되어 시공되고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형태가 상이할 수 있으며, 과도한 물의 사용으로 인해 하부 세대에 누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천장에 오픈되는 피난구에서 내려오는 사다리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도록 해당 공간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음 실외기실 • 84E 타입은 복 1층에는 하향식 피난구가 아닌 대피공간이 설치되며, 실시공 시 소방서 협의에 따라 외부 테라스에 하향식피난구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어 이로 인해 하부층 세대 천장에도 하향식피난구 가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발코니 면적 중 서비스 면적(서비스 면적 초과 부분은 전용면적 산입)은 공급면적에 미포함되어 있는 비주거공간이며, 테라스는(84E, 176) 하부층 지붕을 사용하는 공간으로 관계법상 서비스면적이 아님 • 84E, 176 타입의 테라스는 옥상과 동일하게 대지지분, 공용면적 등과 상관없이 해당 타입에서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계약하여야 하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등기 등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함(단, 배타적으로 사용 시 유지보수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공용부분으로 관리주체가 공용의 목적으로 출입 내지 개방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84E. 176 타입의 테라스에는 우수처리를 위한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시 입주자의 별도 관리가 필요함 • 84E 타입 펜트리(복 1층) 및 드레스룸(복 2층)는 부득이하게 천장 내부에 전열교환기가 설치되어 미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천장고는 약 2,100mm로 낮아지므로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35타입 발코니 2는 입면을 고려하여 테라스 개념으로 설계된 것으로 외부에 샤시는 미설치됨 • 세대 내 및 공용부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방한 개폐범위 창호 프레임 등은 시공 시 선정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전체 고정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외부 석재마감 구간의 단위세대 및 코아부에 설치 창호는 마감 시공을 위해 일부 창호의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출입문 재질은 결로 등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해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 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창호 •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 환경 및 아파트 내/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승인 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을 통해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주방에 면하는 다용도실 도어는 유리가 없는 단열 PVC로 설치됨 • 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충별, 침실별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내외부 창호의 유리사양 중 Low-E 유리의 설치 위치는 결로 및 단열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84D 타입 다용도실 및 135타입 주방창호는 개구부가 작아 미관을 고려하여 일반 프로젝트 단창으로 설치됨 • 세대 내 통합 분전반, 통신 단자함, 콘센트, 통신수구 및 스위치 등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발코니의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내 가스배관은 인덕션 유상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소방설비는 견본주택용이며, 본 공사 시 스프링클러 배관관경 및 기준개수 등 소화시설물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설비배관과 관련하여 PD 점검구가 세대 내에 설치될 수 있고. 세대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피트층 포함)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휀이 노출됨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음(실외시실은 우수 처리를 위한 선홍통임) • 세대 내 동체감지기 1층, 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거실, 기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장에 온수분배기가 설치되고. 후드가 설치되는 장은 수납이 제한적임 전기 • 본 공사 시 씽크대 하부 난방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는 보온 시공을 하지 않음 설비 • 주방 발코니의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선반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 환기장치가 실외기실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천장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 각 세대 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개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되며,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실내로 전달될 수 있고,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보일러 연도는 기능상 외벽으로 돌출되어 시공됨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각동 1층 필로티 및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도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위치 및 개 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은 완속 25기(일부 과충전 방지를 위한 PLC모뎀 일부 적용), 급속 8기가 설치되나, 공사 중 현장여건에 따라 수량의 증감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11 7

기타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의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기

의무사형	t .	적용여부	사양 , 성능 ,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시)
고호비묘 서제기조	단열 조치 준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바닥 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 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1117 1120 1117)	방습층 설치 (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적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적용
(제7조 제2항 제2호)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 (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적용	고효율 변압기 설치
집기보다 선계기조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조명설치 (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MIT MZO MOZ)	대기전력 자동차단 장치 설치 (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 지하 및 지상층 주차장 차량 통행로 유효 높이 : 지하 3층 2.3 m, 지하 2층 2.7m(주차장 진출입층), 지하 1층 2.3m(단, 시공여건상 일부구간이 낮아질 수 있음)
 - 지하 및 지상층 주차장 차량 주차면 유효 높이 : 2.1m 이상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구 분	등급
내진중요도 1(ㅣ등급)	VII- 0.216g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애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Ⅰ~Ⅶ)로 표기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상호	주식회사 명광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씨엔이파트너스	주식회사 인곡엔지니어링
금액	2,150,707,900	572,260,000	107,693,786	106,700,000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i>01282024- 101- 0012600</i> 호	\ 159,727,47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햇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햇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화급이햇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ㆍ허위계약ㆍ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합)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 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가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 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형(차입형) 토지신탁

- 본 주택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 "위탁자"㈜건우씨엠과 "수탁자"(주)한국토지신탁이 2024년 07월 26일자로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되는 것입니다.
- 본 분양(공급)은 위탁자 ㈜건우씨엠과 수탁자(신탁회사) ㈜한국토지신탁 사이에 체결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근거하여 수탁사인 ㈜한국토지신탁이 매도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로서, 신탁재산 및 분양형 토지신탁의 업무 범위 내에서 만 책임을 부담하며 ㈜한국토지신탁과 ㈜건우씨엠 사이의 신탁계약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되는 경우, 본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계약 관련 ㈜ 한국토지신탁의 분양계약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건우씨엠로 면책적 포괄 승계되며, "분양계약자(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위탁자" 및 "수탁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상환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자 : ㈜한국토지신탁, 서울시 080010호 ** 주영업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역삼동) ** 인허가 사항 : 2023년 01월 19일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논산시 도시주택과-2465) ** 공급대상물 소재지 : 충청남도 논산시 취암동 139외 56필지 ** 지목(대표) : 답 ** 지역/지구 : 상대보호구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대지면적 : 21,288㎡ ** 건축면적 : 4,181.1581㎡ ** 연면적 : 80,227.3577 ** 용도 : 공동주택 429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 건축규모 : 지하 3층~지상 25층, 아파트 7개동 및 근린생활시설 ** 2024년 11월 26일 착공신고완료 ** 2027년 10월 준공예정 ** 2028년 01월 입주예정 ** 건축주 겸 신탁업자 : ㈜한국토지신탁 ** 분양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시공사 : 두산에너빌리티(주) ** 위탁사 : ㈜건우씨엠 ** 분양대행 : ㈜가온디앤디 ** 분양대금관리방법 : 신탁사 자금관리(분양형 토지신탁) **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대지소유권 : 100% 소유권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지분등기 ** 본 공고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건축허가 변경 여부,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내용은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지 인근 교통시설과 주변환경 및 개발계획 등은 해당기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i>(</i> 신탁사 <i>)</i>	위탁자	시공사	분양대행사
회 사 명	㈜한국토지신탁	㈜건우씨엠	두산에너빌리티㈜	㈜가온디앤디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 201, A동 1123호 (문정동, 송파테라타워2)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귀곡동)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3402호, 3403호 (구의동, 테크노-마트21)
법인등록번호	110111- 1258220	285011- 0243430	194211- 000943	110111- 6657592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사이버 모델하우스 : 트리븐 논산 홈페이지 (http://www.trivn-doosan-nonsan.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트리븐 논산 견본주택(충청남도 논산시 내동 501번지) / ₴ 1566-6429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부 방침에 따라 주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됩니다.
- ※ 보다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의 확인은 견본 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